

모빌리티인문 정책제안 24-1(통권 11호)

통치와 모빌리티: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Contents 목차

I. 제언 배경	1
1. 근대 감옥에서 모바일 감옥으로	1
2. 전자감독제도의 현황	2
II. 전자감독제도의 의의와 연혁	4
1. 전자감독제도의 법적 성격과 의미	4
2. 전자감독제도의 도입과 확장	5
III. 전자감독제도의 쟁점과 문제	7
1. 미국 전자감독제도와와의 차이	7
2. 법리적 문제	8
3. 재범 억제력 문제	12
4. 인력 문제	13
5. 사회 감시망의 확대와 감시의 보편화	14
IV. 제언	16
1. 전자감독제도의 정당성 회복을 위한 법리적 근거 마련	16
2. 선택과 집중에 따른 운영	16
3. 인문사회학적 연구 사업 추진	17
4. 재범 억제력에 관한 정확한 자료 산출	17
● 참고문헌	18



〈초록〉

통치와 모빌리티: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자감독제도란 신체에 모바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함으로써 대상자의 모빌리티를 제한하는 정책으로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 최초의 전자감독제도는 상습적인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5년을 상회할 수 없었으나, 이후 거듭된 개정으로 현재는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자감독제도는 미국에서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최초로 시행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재범의 억제를 주목적으로 하여 대상 범죄와 부착 기간이 미국의 경우보다 현저히 확장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자감독제도가 보안처분에 해당하고 이중처벌금지원칙, 소급효금지원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현행 전자감독제도는 구체적 내용에 있어 일률적으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도가 재범 억제력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으나 해당 통계 자료는 정확한 재범 억제력을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매년 7천~8천 건 정도의 전자감독 시행 건수에 비하여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현저히 부족하여 전자감독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사회감시망의 확장을 통해 감시의 일상화와 내면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무엇보다도 전자감독제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 범죄와 부착 기간을 축소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에 따른 운영을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전자감독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인문사회학적 연구가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재범 억제력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Keywords

전자감독제도, 모바일 감옥, 재범 억제, 보안처분, 이동통치

〈Abstract〉

Governance and Mobility: Challenge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is a policy that restricts the mobility of individuals by attaching a mobile electronic device to their bodies to track their locations. South Korea has implemented this system since 2008. The initial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targeted repeat sexual offenders, with a limit of 5 years for the attachment of the electronic device. However, through subsequent revisions, the system is now implemented for all crimes at every stage of the criminal process. While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was initially implemented in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overcrowding in prisons, South Korea aims to deter recidivism, resulting in significantly extended periods and coverage compared to the U.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termined that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falls under the category of security measures and is not subject to principles such as double jeopardy or non-retroactive applic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categorize the current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uniformly as a security measure in terms of its specific detail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nnounced that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is highly effective in reducing recidivism, but there are challenges in accurately measuring its effectiveness with available statistical data. Moreover, the system faces difficulties in achieving its purpose due to a significant lack of personnel compared to the annual implementation of 7,000 to 8,000 cases of electronic supervision. There are concerns that the expansion of the social surveillance network may normalize and internalize surveillance. Therefore,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it is proposed to establish precise legal grounds and to operate based on selection and focus by reducing the target crimes and attachment period. Additionally, to prevent the misuse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includ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 i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l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re is a need to produce accurate data on the effectiveness of recidivism deterrence.

Keywords

electronic supervision, mobile prison, recidivism deterrence, security measures, governmobility

전자감독제도의 개요 및 통계 자료를 공유해 주신 인천 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I. 제언 배경

1. 근대 감옥에서 모바일 감옥으로

근대 이전 범죄에 따른 형벌은 신체에 대하여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행해졌으나,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은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전파로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며 신체를 감금하는 방식의 형벌로 대체되었음. 따라서 신체를 구금할 만한 시설과 장치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근대 감옥의 탄생으로 이어졌음.

이와 관련하여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징역이나 구금과 같은 자유형이 신체 자체에 대하여 고통을 주는 형벌이라기보다는 신체를 매개로 하여 개인의 권리이자 재산인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형벌이 “감각의 고통을 다루는 단계에서 그 모든 권리행사를 정지시키는 경제의 단계(an economy of suspended rights)로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함.¹ 나아가 파놉티콘(Panopticon) 감옥을 통해 근대 사회의 감시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몽주의 시대가 규율사회를 창조하고 개인에 대한 권력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켰다고 주장했음. 이러한 푸코의 관점이 가지는 의미는 모빌리티나 임모빌리티가 그 자체로 어떤 수행적 행위일 뿐 아니라, 통치와 관련된 권력 기술의 행사를 위한 수단이자 그 결과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는 것임.²

근대 형벌과 행형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형벌 체제의 변화와 근대 감옥의 탄생이 18세기 ~ 19세기 사이 산업화 및 근대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³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던 시대, 감옥에 갇힌 죄수는 노역에 동원되었고 형기를 마치면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갈 것이 요구됨에 따라, 범죄자의 재사회화가 형벌의 주요 기능으로 평가되기 시작했음. 이에 따라 형사적 제재에 치료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갱생을 위한 조치가 중요시되었음. 전통 감옥은 교도소, 치료보호소, 보호관찰소 등의 형태로 다변화되었고, 범죄자 개개인을 분류하고 특정하며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음.

1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옮김, 나남, 2020, 39쪽.

2 카타리나 만더사이트 외 편저, 《모빌리티와 푸코》, 김나현 옮김, 엘피, 2022, 16쪽.

3 한인섭, 《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2006, 14쪽.

한편, 오늘날 모빌리티 테크놀로지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국가가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통치인 형사적 제재에도 적용되기 시작함. 전자감독제도는 국가의 권력과 모빌리티 테크놀로지가 결합한 가장 극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음. 전자감독제도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08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짧은 기간 안에 양적 확장과 질적 확장을 거듭해 온, 고도 모빌리티 시대에 등장한 모바일 감옥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근대 감옥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해 가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의 시대를 배경으로 기계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현상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근래 보편화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 역시 근래 변모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현상과 무관하지 않음. 따라서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문제와 더불어 인문사회학적 통찰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2. 전자감독제도의 현황

2008년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는 상습성폭력사범에 한하였기 때문에 당시 전자감독 집행 대상 인원은 205명에 불과하였음. 이후 거듭된 법률 개정으로 미성년자 유괴와 살인까지 대상 범죄가 확대되면서 2011년에는 1,561명으로 증가하였음.⁴ 특히 2020년부터는 보석과 가석방 조건으로서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치추적 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위치추적 건수는 연 8,000건을 상회하고 있음. 아래 <표 - 1>은 위치추적이 시행되고 있는 현황을 나타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4,668	4,563	6,196	10,827	8,476	7,411
성폭력	3,270	3,239	3,239	3,279	3,282	3,287
유괴	17	18	18	20	21	15
살인	1,034	971	865	900	913	910

4 문희갑, <범죄예방정책으로서 전자감독제도 개요>,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제7회 모빌리티인문 정책세미나 발표 자료, 2024, 11쪽.

강도	347	335	277	283	328	296
기타	-	-	1,797	6,345	3,932	2,903

〈표-1〉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현황
(출처: e-나라지표 홈페이지)

2018년부터 전자감독 접수사건 중 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을 제외한 사건을 부착 기간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계	3월 미만	3월~6월 미만	6월~1년 미만	1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30년 미만	30년 이상
2018	929	60	140	159	243	90	216	21	0
	100%	6.5%	15.1%	17.1%	26.2%	9.7%	23.2%	2.2%	0.0%
2019	830	42	93	138	219	133	181	24	0
	100%	5.1%	11.2%	16.6%	26.4%	16.0%	21.8%	2.9%	0.0%
2020	2,383	1,137	422	218	218	107	247	34	0
	100%	47.7%	17.7%	9.1%	9.1%	4.5%	10.4%	1.5%	0.0%
2021	5,599	2,763	1,361	792	322	107	221	33	0
	100%	49.4%	24.3%	14.1%	5.8%	1.9%	3.9%	0.6%	0.0%
2022	2,717	362	1,046	722	348	107	103	24	5
	100%	13.3%	38.5%	26.6%	12.8%	3.9%	3.8%	0.9%	0.2%

〈표-2〉 전자장치 부착기간별 현황
(출처: 법무부 2023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2020년부터 가석방의 조건으로 부과되는 전자감독의 대상 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면서 단기 부착률이 크게 증가하였음. 주어진 자료를 통하여 성폭력 범죄를 비롯한 특정 범죄군의 부착 기간 추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2022년에 ‘30년 이상’이 결정된 사건의 수가 5건이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이렇듯 전자감독제도는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간에 걸쳐 시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사절차 전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즉, 형집행이 종료된 자뿐만 아니라, 형집행 단계에서는 가석방 조건으로, 재판 단계에서는 보석 조건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나아가 최근 법률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전자감독제도의 보편화가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인권 문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재범 방지의 실효 문제, 전자감독제도 운영을 위한 물적·인적 조건 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함.

II. 전자감독제도의 의의와 연혁

1. 전자감독제도의 법적 성격과 의미

대상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위치추적을 하는 방식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모빌리티를 제한하는 제도에 관하여 시행 주무부처인 법무부, 그리고 관련 법률은 “전자감독제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반면, 광범위한 전자감독의 활용으로 국가가 개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점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전자감시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법무부는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및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자 등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라고 정의함.⁵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자감독제도의 의의와 그 법적 성격은 이 제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를 제기함. 국가가 행사하는 형사적 제재는 크게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나눌 수 있음. 형벌은 범죄자가 이미 저지른 과거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제재로서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등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9가지 종류에 한함.⁶ 반면, 보안처분은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형사적 제재로서⁷ 치료감호,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이 여기에 속함. 전자는 범죄자의 책임이 전제되어야 하고 형벌은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강조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재범가능성과 보안처분 사이에서의 비례의 원칙이 강조됨.

따라서 전자감독제도가 형벌적 성격을 지니는가, 아니면 보안처분의 일종인가에 따라 해당 제도를 지배하는 원칙이 달라지게 됨. 아울러 우리 헌법은 이미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

5 법무부, <전자감독제도>,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moj.go.kr/moj/169/subview.do> (2024. 6. 18. 최종방문).

6 형법 제41조에 따르면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다.

7 오영근,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 2018, 549쪽.

해서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만일 전자감독제도가 형벌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한다면 이중처벌금지원칙 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게 됨.

2. 전자감독제도의 도입과 확장

전자감독제도는 2007년 제정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394호)을 근거로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⁸ 당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 범죄자를 상대로 형집행 종료 이후 또는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함께, 그리고 가석방 및 가중료 등과 함께 부과할 수 있었으나 연이은 개정을 통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범죄 및 그 범위를 확장해 왔음.

제정법이 시행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범죄에 추가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2009. 5. 8. 법률 제9654호)이 있었고 이에 따라 법률명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이어 2010년 개정(2010. 4. 15. 법률 제10257호)에서는 살인범죄, 2012년 개정(2012. 12. 18. 법률 제11558호)에서는 강도범죄를 대상 범죄에 추가하였음. 뒤이어 2017년(2017. 10. 31. 법률 제14975호) 개정에서는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죄가 추가되었고, 2023년 개정(2023. 7. 11. 법률 제19519호)에 따라 스토킹범죄도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한 범죄가 되었음. 한편, 2020년 개정(2020. 2. 4. 법률 제16923호)에서는 기존에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한정하였던 전자장치의 부착을 해당 범죄 이외의 모든 범죄로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제22조 제2항),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31조의2 이하) 사실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모든 범죄로 확장되었음.⁹

이렇듯 대상 범죄를 확장하는 한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상한도 상향되었음. 제정법에 따르면 상습성범죄자에 한하여 최장 5년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 2009년 개정

8 제정법률의 시행일은 당초에 2008년 10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동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의 연이은 발생으로 시행 전 재차 법률 개정(2008. 6. 13. 법률 제9112호)을 통하여 2008년 9월 1일로 시행일을 앞당겼다.

9 이 개정을 통해 해당 법률은 현행과 같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로 변경되었다.

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되었으며, 2010년 개정을 통해 그 상한이 현행법과 같이 30년으로 연장되었음.¹⁰ 이 외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한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준수해야 할 특수사항들을 신설,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왔음. 특히 2008년 6월 13일 개정된 법률 제9112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 범죄에 살인범죄를 포함시키는 한편, 제정법 시행일인 2008년 9월 1일 이전에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이 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음. 요컨대 전자감시에 관한 근거 법률은 제정 이래 짧은 기간 동안 그 적용의 범위와 정도를 큰 폭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개정을 단행하였음.

구분 연도	대상범죄	부착기간 상한	기타
2007	상습성폭력 범죄자	5년	
2009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추가	10년	
2010		30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소급 적용
2012	강도범죄 추가		
2020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추가		전자감시 대상에 모든 가석방 예정자, 보석대상자 포함
2023	스토킹범죄 추가		

〈표-3〉 「전자장치부착법」의 주요 개정 동향

10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의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은 최장 45년까지 가능하다.

III. 전자감독제도의 쟁점과 문제

1. 미국 전자감독제도와 차이

전자감독은 1960년대 미국 하버드대 랠프 슈워츠게벨(Ralph Schwitzgebel) 교수가 고안하였고, 1983년 뉴멕시코주의 J. Love 판사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제도화되기 시작했음. 당시 미국은 교도소의 과잉수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고, 정부의 교도경비 예산이 취소되어 이를 위한 타개책이 필요한 시점이었음.¹¹ 즉, 전자감독제도는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의 해결과 경비 절감의 필요성 등으로 교도소 구금형의 대안적 성격으로 태동한 제도임.¹²

이후 미국에서는 주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와 결합하여 전자감독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의 전자감독프로그램은 대부분 음주운전자와 같은 경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부착기간 역시 수개월 이내임. 일례로 미국 일리노이주 헨리카운티(Henry County)의 경우에는 부착기간이 보통 30일에서 180일¹³ 사이이며, 연방 차원에서 행해진 전자감독의 대상자 중 피고인의 경우에는 평균 252일,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147일에 그침.¹⁴

반면,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교도소의 과밀수용보다는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충분한 이론적 논의가 축적되지 않은 채 도입 이후 적용 범위와 기간이 급격히 확장되어 왔음. 부착 기간 역시 미국의 경우보다 현저히 긴 특징을 갖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특징은 부착대상자가 국가에 의한 감시를 내재화하고 일상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음.

11 이견수,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10(2), 2022, 241~243쪽.

12 김종구, <범죄예방을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0(3), 2023, 66쪽.

13 Henry County Illinois,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GPS," 일리노이주 헨리카운티 홈페이지, <https://www.henrycty.com/FAQ.aspx?TID=26> (2024. 6. 18. 최종방문).

14 United States Courts, "Federal Location Monitoring," 미연방법원 홈페이지, <https://www.uscourts.gov/services-forms/probation-and-pretrial-services/supervision/federal-location-monitoring> (2024. 6. 18. 최종방문).

2. 법리적 문제

이른바 위험사회의 등장에 따라 미래 위험에 대한 예방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음. 전통적인 형벌은 과거 행적에 대한 책임을 처분의 근거로 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의 기능을 위한 보안처분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

사회적 환경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보안처분이 등장하였는데, 특히 현행 전자감독제도는 전통적인 보안처분보다 다양하고 까다로운 법리적 쟁점을 야기함.

1) 전자감독제도의 법적 성격

전자감독제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입장과 보안처분의 일종이라고 보는 입장이 대립되어 왔음. 전자감독제도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는 전자감독제도가 곧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국가의 의무, 형법상 제원칙 등에 따른 제약을 받는가의 문제와 직결됨. 헌법재판소는 전자감독의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보안처분은 소급효금지의 원칙 등 형법상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¹⁵ 사생활의 비밀, 일반적 자유 등의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¹⁶ 이러한 견해를 고수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전자감독이 사실상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지적하며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논문들이 다수 출간되었음.¹⁷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전자감독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이를 유형화해 보면 ‘형 집행 종료 후 전자감독’, ‘가석방 및 가종료에 따른 전자감독’, ‘집행유예에 따른 전자감독’, ‘보석조건으로서의 전자감독’,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서의 전자감독’으로 나눌 수 있음. 이 중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감독’을 전형적인 보안처분의 예로 이해

15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 2011헌바393 병합.

16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89.

17 김중세,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재판소 2012.12.27.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사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54, 2014, 61쪽 이하; 김진한, 〈새로운 형태의 형사제재와 소급처벌 금지 원칙 -전자장치부착법 부칙에 대한 합헌결정(2010헌가82)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43(2), 2014, 1쪽 이하; 박찬걸,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헌법논총》 24, 2013, 347쪽 이하; 서보학, 〈전자장치부착 명령 소급규정의 위헌성〉, 《경희법학》 48(4), 2013, 107쪽 이하; 이인영, 〈전자장치부착법 부칙조항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홍익법학》 14(1), 2013, 901쪽 이하 등.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석방 및 가종료에 따른 전자감독’, ‘집행유예에 따른 전자감독’은 본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과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변형된 형벌 집행의 예로 볼 수 있음.¹⁸ 또한 ‘보석조건으로서의 전자감독’과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서의 전자감독’ 역시 형벌은 아니지만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려지는 강제처분으로서 형벌이나 수사상 강제처분의 성격이 짙음.

헌법재판소는 전자감독제도를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따라서 과잉금지원칙 및 소급효 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전자감독은 수사, 재판, 형집행 등 형사절차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단계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그 성격 역시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수정될 필요가 있음.

2) 전자감독제도의 목적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이래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관련 법률의 입법 목적도 다음과 같이 변화했음.¹⁹

2009년	2012년	2020년
이 법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 4〉 「전자장치부착법」 목적 조항의 변천

2009년과 2012년 법에서는 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 즉 특별예방의 효과를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최종적 목표였다면, 2020년 법은 불구속재판의 확대, 범죄인의 재사회화, 국민의 보호를 등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2020년 개정에 따른 목적 조항이 기존

18 김법식·송광섭,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정당성과 그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55, 2017, 196쪽.

19 제1조의 목적 조문은 제정 이후 세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제정법과 2009년 개정은 그 부착 대상자만 확대했을 뿐 근본적인 내용의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2009년 개정법상의 조문을 인용한다.

의 조항과 비교하여 두드러진 점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불구속재판을 확대하는 것을 그 목적 중 하나로 두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유죄의 확정 판결 이후 형이 집행되기 이전까지 가능한 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리임. 헌법재판소는 신체의 자유가 “모든 자유권적 기본권의 뿌리”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하였음.²⁰

구속은 엄밀한 구속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고, 특히 수사단계에서는 필요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부과되어야 하는 강제처분임. 「전자장치부착법」은 구속의 처분을 전자장치 부착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며, 이와 같은 조치가 정당화되려면 ① 전자장치 부착이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논의, ② 전자장치 부착명령 절차에 구속의 경우만큼 엄밀한 요건과 절차의 완비, ③ 전자장치 부착이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구속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같은 수준이어야 할 것 등이 요청됨.

현행 전자감독제도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재판을 받는 피고인, 형집행 중인 수형자, 형집행이 종료된 자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단계에서 행해지고 있음. 위와 같은 정당화 요소를 갖추려면 우선 피의자의 최대 구속기간이 30일, 피고인의 경우는 각 심급마다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각 단계마다 행해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실질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요건과 절차가 구비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대상자의 실질적 기본권 침해 정도, 대상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사회생활의 위축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해야 함.

3) 과잉금지원칙

전자감독제도의 형벌적 성격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국가 공권력 처분이라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의 지배를 받음. 헌법재판소는 전자감독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지만,²¹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범죄와 부착기간의 급격한 확장은 다른 어떤

20 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3헌가2.

21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89.

원칙보다도 과잉금지원칙의 위반가능성이 농후함.

특히 전자감독제도 관련 법률 개정을 살펴보면, 2007년 제정 당시는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최장 기간이 5년이었지만, 2008년에는 10년, 2010년에는 30년으로 상향되었음. 제정 시점에 서부터 3년 안에 부착기간 상한이 5년에서 30년으로 상향되었다는 사실은 부착명령기간과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또는 조사를 기반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²² 이는 당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무마시키기 위한 대응의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과잉금지원칙의 명백한 위반 가능성을 시사함.

4) 소급효금지원칙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2010년 7월 개정을 통해 해당 법률의 시행 시점 이전에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 이내의 사람들, 즉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였음.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해서도 전자장치의 부착이 행동의 자유 혹은 인격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소급효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았음.²³

소급효금지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중 하나로서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이후에 제정된 법률로 이전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며,²⁴ 헌법 제13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1항에 법적 근거를 둬.

이 원칙은 국가행위를 예측하고 이미 제정된 법규범이 현재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수범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며²⁵ 나아가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 문제와도 연결됨.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총 36건인데, 이 중 26건이 소급 형기종료자에 의해 발생했음.²⁶ 이들은 과거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고 완전한 집행이 종료한 상태에서 소급 입법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이 강

22 문희갑, 〈전자감독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호관찰》 20(1), 2020, 87쪽.

23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 2011헌바393 병합.

24 오영근, 앞의 책, 32쪽.

25 이부하,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20(1), 2014, 2쪽.

26 최정학, 〈전자감시제도의 적용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25(3), 2014, 202쪽.

제되었음. 적어도 이들에게 있어서 법적 안정성은 크게 위태로워졌으며 이에 대한 실망, 좌절 그리고 불만이 전자발찌 훼손으로 이어졌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함.

3. 재범 억제력 문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통계와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재범 억제 효과는 다음과 같음.

<전자감독 대상 범죄군별 동종 재범률 비교>			
구분	제도 시행 전 ('03.~'07. 평균)*	제도 시행 후 ('08.~'23. 평균)	비고
성폭력사범	14.1%	1.6%	1/9
살인사범	4.9%	0.03%	1/163
강도사범	14.9%	0.19%	1/93

〈표-5〉 전자감독 대상 범죄군별 재범률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는 위 표에서 산출한 수치를 근거로 전자감독의 재범 억제력을 널리 홍보하고 있음. 그러나 제도 시행 후의 재범률은 초범과 재범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사이에 모두 발생한 경우의 자료이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측정된 자료는 초범이 언제 저질러졌는가에 대한 제한이 없음. 즉, 초범이 저질러진 시기는 제도 시행 기간 15년을 훨씬 상회하여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 측정기간이 길어질수록 재범율은 당연히 높아지므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제도 시행 이후와 마찬가지로 초범과 재범의 발생 기간을 동일한 수준으로 한정해야 할 것임.

또한 법무부는 아직 전자장치 부착을 해제한 이후의 재범 억제력에 관한 집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감독제도의 재범 억제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실증적 증거가 부족함.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의 억제력이 실제로 현저하게 의미 있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탈착 이후의 재범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면 이는 당해 제도가 제시하고 있는 범죄자의 재사회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4. 인력 문제

앞서 <표 -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 기준 전자감독 시행 건수는 7,000건을 상회하고 있음. 한편, 전자감독제도의 시행 경로는 다음과 같음.



<그림 - 1> 전자감독업무 진행 절차
(출처: 문희갑(2024)²⁷⁾

서울과 대전에 소재한 2개의 관제센터가 전국을 분할하여 전국 58개의 보호관찰소를 관할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감독업무는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위치추적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가 수반되고 있음. 위치추적만으로는 대상자의 소재지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어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감독, 이동 경로의 분석, CCTV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각종 지원 연계 등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인천 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에 따르면, 연간 7천~8천 건에 달하는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2024년 현재 총 391명으로 1인당 대상자 수가 18.2명에 이르며, 이는 4~5명에 그치는 유럽의 경우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함. 현재 형사사법체계에 지원되는 예산은 수사와 재판에 편중되어 있어 적절한 보호관찰을 전제하기 위한 인적·물적 지원은 열악한 편임.

27 문희갑, 앞의 자료, 8쪽.

5. 사회 감시망의 확대와 감시의 보편화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는 미국과 달리 자유형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형기를 종료하거나 가석방 및 보석 대상자, 나아가 스토킹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자에 대한 추가적인 감시 수단으로의 의미가 있음. 또한 평균 부착기간도 10년을 상회하고 있어 양적·질적으로 전자감독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감옥이 고정된 시설에서 이동하는 장치로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함. 푸코는 감시를 위한 최적의 시설로 파놉티콘을 예로 든 바 있지만,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주축으로 하는 전자감독제도는 고정된 시설인 감옥보다 변용, 진화, 확장의 가능성이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높은 수준임.

감독 담장은 GPS로 대체되었고, 전자감독제도는 대상자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응시 장치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감시의 효과는 감시 감옥으로 대표되는 파놉티콘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일탈을 감지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 이상으로 감시의 일반화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신상정보공개, 수강 명령 등 다른 조건과 함께 결부된 전자발찌는 감시와 규율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고정된 시설에서의 직접적 감시는 기록물과 아카이브를 거의 생성하지 않지만, 위치의 추적과 분석은 무한한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특징이 있음.²⁸ 다양한 지표와 데이터의 축적은 이를 추적해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고 나아가 예측 모델 구축까지 가능하게 함. 국가의 제재는 개인의 과거 행실이 아닌 향후 위험을 중심으로 옮겨갈 우려가 있으며, 이는 직접적 전자감독 대상자뿐 아니라 (잠재적 감시대상자인) 일반인의 감시의 내면화와 일상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러한 감시가 실제 전자감독 대상자들에게 야기하는 효과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발찌의 효과가 곧 착용 대상자의 사회적 활동의 제한과 수치심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전자발찌의 최초 부착 대상이 상습성범죄자이고, 전자발찌를 끊고 재범을 저지른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 = 성범죄자 또는 흉악범’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농후함. 전자발찌는 착용 대상자에게 일정한 공간적 범위 이상의 모빌리티

28 카타리나 만더사이트 외 편저, 앞의 책, 140쪽.

를 허용하지 않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 허용된 공간에서도 외부와의 적절한 교류를 위축시키고 단절하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조사 대상자 중 전자감독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자는 전체의 84%에 이르며, 외출시 수치심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의 비중은 69%에 이른다.²⁹ 즉, 허용되지 않는 행위뿐 아니라 일상적이고 적법한 사회생활까지 제약함으로써 오히려 재사회화를 저해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29 김지선 외,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I)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483쪽.

IV. 제언

1. 전자감독제도의 정당성 회복을 위한 법리적 근거 마련

현행 전자감독제도는 그 법적 성격과 지배 원리를 특정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재범의 억제력’은 모든 전자감독의 경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전자감독제도의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원리와 근거가 요구됨.

전술한 바와 같이, 전자감독제도는 형사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행해지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법적 성격과 지배 원리가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과되는 경우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적용의 한계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선택과 집중에 따른 운영

〈표 -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감독의 시행 건수는 짧은 시간 내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음. 법무부는 2023년 3월 전자감독 관리인력을 2018년 162명에서 2022년 450명으로 증원했다고 발표했으나, 같은 기간 1명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해야 하는 대상자는 19.3명에서 17.1명으로 줄었을뿐, 여전히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음. 거듭된 개정으로 적용 영역과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입법 태도에 비추어 업무 과중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워 보임.

이에 전자감독제도의 남용을 막고 관리인력의 업무 과중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 요건과 기한을 엄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가석방과 보석의 조건으로 행해지는 전자감독은 여타의 경우와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재고될 필요가 있음.

3. 인문사회학적 연구 사업 추진

최근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은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제1조의 목적, 즉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연구 등의 시책은 과학기술진흥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 이는 모빌리티 테크놀로지를 효율적 감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에 근거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전자감독제도의 효율성, 기본권 보호 규정의 저촉 여부,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인문사회학적 연구는 누락되어 있음. 「전자장치부착법」은 제정 당시부터 제3조에서 국가의 책무로서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실천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폭넓은 전자감독제도의 활용을 위해서가 아닌, 목적 조항에 제시된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와 조사 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 마련이 필요함.

4. 재범 억제력에 관한 정확한 자료 산출

전자감독 시행의 우선적 근거는 ‘재범의 억제력’에 있음. 그리고 ‘재범의 억제력’은 전자감독 시행으로 제한되는 기본권, 대상자의 과거 범죄에 대한 책임 등과 함께 전자감독제도의 허용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함. 따라서 재범 억제력 효과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법상의 제원칙에 부합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감독제도의 시행 기간 내의 재범 발생률 자체는 높지 않지만 전자감독제도 시행 전 초범과 재범이 발생한 기간을 동일하게 정하지 않은 점, 전자장치 부착 해제 이후의 재범 발생률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기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또한 전자감독이 아닌 다른 종류의 보호관찰 제도와 범죄 억제력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도 보충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김범식·송광섭,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정당성과 그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55, 2017, 191~237쪽.
- 김종구, 〈범죄예방을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0(3), 2023, 63~88쪽.
- 김종세,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재판소 2012.12.27. 2010헌가 82, 2011헌바393(병합) 사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54, 2014, 61~81쪽.
- 김진한, 〈새로운 형태의 형사제재와 소급처벌 금지 원칙 -전자장치부착법 부칙에 대한 합헌결정 (2010헌가82)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43(2), 2014, 1~30쪽.
- 문희갑, 〈전자감독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호관찰》 20(1), 2020, 83~113쪽.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옮김, 나남, 2020.
- 박찬걸,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헌법논총》 24, 2013, 347~391쪽.
- 서보하, 〈전자장치부착 명령 소급규정의 위헌성〉, 《경희법학》 48(4), 2013, 107~142쪽.
- 오영근,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 2018.
- 이건수,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10(2), 2022, 239~269쪽.
- 이부하,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20(1), 2014, 1~21쪽.
- 이인영, 〈전자장치부착법 부칙조항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홍익법학》 14(1), 2013, 901~936쪽.
- 최정학, 〈전자감시제도의 적용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25(3), 2014, 179~220쪽.
- 카타리나 만더사이트 외 편저, 《모빌리티와 푸코》, 김나현 옮김, 앨피, 2022.
- 한인섭, 《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2006.

2. 기타 자료

- 김지선 외,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I) -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문희갑, 〈범죄예방정책으로서 전자감독제도 개요〉,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제7회 모빌리티인문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2024.

법무부, 〈전자감독제도〉,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moj.go.kr/moj/169/subview.do> (2024. 6. 18. 최종방문).

Henry County Illinois,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GPS,” 일리노이주 헨리카운티 홈페이지, <https://www.henrycty.com/FAQ.aspx?TID=26> (2024. 6. 18. 최종방문).

United States Courts, “Federal Location Monitoring,” 미연방법원 홈페이지, <https://www.uscourts.gov/services-forms/probation-and-pretrial-services/supervision/federal-location-monitoring> (2024. 6. 18. 최종방문).